

##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 분석

전병욱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lubicon@yonsei.ac.kr)

본 연구는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일반적인 이익조정 외에 대기업에 비해 우호적인 법인세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이 대기업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에 최근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법인세법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손금소급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 사업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re-managed taxable income)이 각각 (-)와 (+)이고 그 합이 (+)이면 일반적인 이익조정과는 반대로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특수한 이익조정이 최근 세율인하(2001년말과 2004년말)에도 유의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과 함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 조정을 했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익조정도 세율인하 폭이 작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어서 이익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2001년말에는 비유의적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충하면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익을 이연시킨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추가적으로 기업유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인세제가 이익조정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향후 법인세율을 크게 인하할 계획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입안 및 경제적 효과의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이익조정, 세율인하, 결손금소급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

### 1. 연구의 배경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업의 경영자는 이익의 귀속기간을 변경시켜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의 유인을 가진다(Scholes and Wolfson, 1992). 즉, 경영자는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고 세율인하연도로 보고이익을 이연

시키는 이익조정을 하면 법인세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화폐의 시간가치에 따른 이익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김경호와 박종일, 2003). 이러한 이익조정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내외의 실증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choles et al., 1992; Guenther, 1994; Maydew, 1997; Lopez et al., 1998; 김경호와 박종일, 2003).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이익조정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대기업에 비해 우호적인 법인세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이 대기업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각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net operating loss, 이하 "NOL")의 이월공제만을 허용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와 함께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정한 요건 없이 산출세액의 5~30%를 차감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손금소급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 사업연도(즉, 세율인하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이 각각 (-)와 (+)이면서 그 합이 (+)인 중소기업은 일반적인 이익조정과는 반대로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동(同)기간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에 이러한 법인세법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2002년과 2005년의 세율인하를 전후하여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선행연구와 같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했지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특정 중소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앞당기는 특수한 이익조정을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는 간과한 것으로 법인세제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06.17.자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귀속 과세소득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sup>1)</sup> 심의·의결하였고 국회 개원과 함께 동(同)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하였다.<sup>2)</sup> 향후 예상되는 이러한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의 주장과 같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활성화 및 고용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업들의 이익조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이연시키는 일반적인 한편적인 이익조정과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반대의 이익조정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는 것을 과거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보임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다루었고, III장에서는 이론적 분석, 연구모형 및 표본과 분석기간을 제시하였고, IV장에서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으며, V장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1)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하계획 <표 1>과 같다.

<표 1> 2008.06.17.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율 인하계획

과세표준	~2007년 (현행)	과세표준	2008~2009년	2010년~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5%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2%	20%
이하	13%	이하	11%	10%

2) 연도중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인세법을 개정한 후에 당해연도 귀속 과세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과거의 법인세율 인하에서도 이러한 예는 없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과거의 법인세법 개정은 모두 연도말의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후에 다음 연도부터 (2005년의 세율인하는 예외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지난 후에) 시행되었다.

## II. 선행연구

Scholes and Wolfson(1992)에 의하면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들에게 이익을 이연시켜서 재무보고상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인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Scholes et al.(1992)은 과세소득을 이연시키는 것은 법인세 부담의 감소라는 편익(benefits)과 함께 거래상대방의 법인세 부담과 함께 비세금비용(nontax costs: 즉, 재무보고상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제약(impediments)이 있기 때문에<sup>3)</sup> 동(同)편익이 동(同)제약을 넘어설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Scholes et al.(1992)은 미국기업들이 1986년의 법인세율 인하(tax reform act, 이하 "TRA86")를 전후하여 매출충이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sup>4)</sup> 이연시켰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를 앞당겨서 계상하지는 않았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이익조정이 계정과목별로 다르게 나타나

다고 주장하였다.<sup>5)</sup>

Guenther(1994)는 미국기업들이 TRA86 전에 과세소득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부상 이익을 감소시키는 (즉, 장부상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했는지 여부를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으로 측정하였는데, 규모가 큰 기업들은 동(同)이익조정의 정도가 큰 반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동(同)이익조정의 정도가 낮고<sup>6)</sup> 경영자 지분율과 동(同)이익조정의 정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Guenther(1994)는 매출액이 상위 1분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dummy 변수로 기업의 규모를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법인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 한계세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부상 이익을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이연시키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aydew(1997)는 미국기업들이 TRA86을 전후하여 이월결손금소급공제(NOL carryback)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상이익은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이연시키는 반면 비경상 손실은 앞당겨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율이 인하되

3) 김경호와 박종일(2003)은 과세소득의 이연이 비세금비용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기업활동의 적시성을 침해하고, 정상적인 거래의 왜곡을 통해 관리비와 이행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영자의 기간별 보상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세무조사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4) TRA86을 전후한 법인세율의 변화는 <표 2>와 같다.

<표 2> TRA86을 전후한 법인세율의 변화

과세표준	1984~1986	1987	1988~1992	과세표준	1984~1986	1987	1988~1992
~25,000\$	15%	15%	15%	100,000~335,000\$	46%	42.5%	39%
25,000~50,000\$	18%	16.5%	15%	335,000~1,000,000\$	46%	40%	34%
50,000~75,000\$	30%	27.5%	25%	1,000,000~1,405,000\$	51%	42.5%	34%
75,000~100,000\$	40%	37%	34%	1,405,000\$~	46%	40%	34%

5) Scholes et al.(1992)은 이 밖에 TRA86 전의 (판매비와 관리비+매출액)의 비율이 TRA86 후보다 유의적으로 크다고 주장하였는데, 동(同)주장은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6) Guenther(1994)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장부상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의 정도가 낮은 것은 부채약정(debt covenant)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 전에 높은 한계세율로 이월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받으려 (즉, TRA86을 전후한 법인세율 차이 (tax rate spread)를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aydew(1997)은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경감하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 정도가 작았다고 주장하였다. Maydew(1997)의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이연시키는 일반적인 이익조정 외에 이월결손금소급공제 등을 통해 반대의 이익조정(즉,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의 가능성도 있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본 연구에 출발점을 제공하였다.

Lopez et al.(1998)은 TRA86을 전후하여 미국기업들이 장부상 이익을 이연시킨 이익조정 정도를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하였는데, 조세회피의 적극성(tax-aggressiveness)이 클수록 동(同)이익조정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Lopez et al.(1998)은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가 클수록 동(同)이익조정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여 Guenther(1994)를 뒷받침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김경호와 박종일(2003)이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sup>7)</sup> 국내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장부상 이익을 이연시킨 이익조정을 했고, 조세혜택의 크기가 클수록 동(同)이익조정 정도도 크다고 주장하여 Lopez et al.(1998)을 뒷받침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내와 외국의 선행연구는 모두 법

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익을 이연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Maydew(1997)와 Lopez et al.(1998)이 개별기업의 특징을 이용하여 동(同)이익조정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분석했지만, 기업유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인세제가 이익조정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발견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법인세법에서 다양한 조세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고, 동(同)분석의 예상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경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 III. 연구설계

#### 3.1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의 이론적 분석

##### 3.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4조~제104조의11)에

7) 19991년 이후 법인세율의 변화는 <표 3>과 같다.

<표 3> 1991년 이후 법인세율의 변화

과세표준	1991~1993	1994	1995	1996~2001	2002~2004	2005~
과세표준 1억원 초과	34%	32%	30%	28%	27%	25%
이하	20%	18%	18%	16%	15%	13%

〈표 4〉 영리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액계산구조<sup>8)</sup>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NI
(±)세무조정	TA
각사업연도소득금액	TI
(-)이월결손금 <sup>9)</sup>	NOL
과세표준	TB
(×)세율	t
산출세액	TL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sup>10)</sup>	C
부담할세액	TP

는 직접국세에 대한 다양한 조세감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세감면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들도 있지만 (특별감가상각비, 익금불산입, 준비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대부분은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형태로 적용된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이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컨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일정수준 이상 지출하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동법 제10조)) 사업용자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임시투자세액공제(동법

제26조)) 적용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동법 제7조)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특정한 요건 없이 산출세액의 5~30%를 차감한다.

즉, 1994년 이후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시근로자 및 자본금 규모로 규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01년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은 부록의 〈표 16〉와 같다.)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01년 이후에 적용되는 비율은 부록의 〈표 17〉과 같다.) 특정한 요건 없

8) 약어들은 임의로 정하였다.

9) 이월결손금 외에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도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만 〈표 5〉와 같이 이월결손금에 비해서는 상대적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기로 한다.

〈표 5〉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이월결손금 등의 비율\*

연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2004년	124,434,816	20,254,179(16.3%)	447,298(0.4%)	1,927,960(1.5%)	101,805,379
2005년	155,133,171	25,238,358(16.3%)	543,322(0.4%)	2,373,747(1.5%)	126,977,744
2006년	160,850,577	24,188,952(15.0%)	645,873(0.4%)	2,959,111(1.8%)	133,056,641

\* 자료: 국세통계연보 (단위:백만원, 괄호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상대적 비율)

10)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계산을 조정해야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6조)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전병욱과 최원욱(2007)의 표본연구에 의하면 2003~2004년에는 6.3%)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기로 한다. 최저한세를 고려한 세액계산구조는 전병욱과 최원욱(2007)을 참고한다.

이 차감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감면 제도이다.

재정경제부의 연도별 조세지출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5~2007년) 각각 4,914억원, 9,003억원 및 1조177억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시행되었는데, 이것은 임시투자세액 공제(2007년에는 1조8,238억원)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2007년에는 1조3,925억원)와 함께 전체 조세지원 금액 규모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조세감면 제도이다.

### 3.1.2 결손금소급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과 결합한 이익조정

법인세법에서는 기간단위과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NOL)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NOL carryforward,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1년의 소득금액에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게 하여 (NOL carryback, 동법 제72조 제1항) 자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함에 따라 감소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표 4>의 약어들을 이용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환급세액} &= \min(\text{①}, \text{②}) \\ \text{①} &= TL_0 - (TB_0 - X) \times t_0 \\ \text{②} &= TL_0 - C_0 = TP_0 \text{ (한도)} \end{aligned}$$

하첨자 0: 직전 사업연도

X: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는 환급세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전액이 아니라 그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X)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①과 같이 결손금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실제 부담했던 산출세액( $TL_0$ )과 X를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했을 경우 부담했을 산출세액( $(TB_0 - X) \times t_0$ )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①에서 주목할 것은 환급세액이 산출세액의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감소하더라도 (즉,  $TL_0$ 에서  $(TB_0 - X) \times t_0$ 로 감소하더라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재계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경감하는 세액감면은 (법인세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산출세액을 재계산할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결손금소급공제를 통해 산출세액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면 이러한 법인세법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정도로 직전 사업연도에 이익을 앞당겨서 계상하고 (earnings acceleration) 이러한 결과 과다하게 계상된 산출세액에 따라 역시 과다한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

는 결손금소급공제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에 과다하게 납부한 산출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에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감면을 납부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한 사업연도에 걸친 법인세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이러한 이익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연속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와 함께 결손금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면 굳이 이익을 앞당겨서 계상하는 이익조정을 할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연속한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세율인하 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의 크기가 세율인하 후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액감면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특정한 요건 없이 시행되기 때문에 법인세율의 인하를 전후하여 산출세액의 재계산을 통한 이익조정

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을 이용하여 이를 설명하기로 한다.

<표 6>은 법인세율이 인하된 2004년말을 전후하여 이익조정을 하기 전에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억원과 4억원의 과세소득(즉, 각사업연도 소득금액(TI))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2005년의 이익 6억원을 앞당겨서 2004년에 계상함으로써 2004년과 2005년의 과세소득이 각각 4억원과 -2억원이 될 경우의 법인세 부담액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업이 산출세액의 15%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표 6>과 같이 2004년과 2005년의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는 3,230만원에서 2,76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 부담의 감소는 결손금소급공제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효과가 결합하여 나타난 것인데, <표 6-1>과 같이 동(同)감면제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표

<표 6> 법인세율의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앞당겨서 계상하는 중소기업의 이익조정 사례

(단위: 백만원)	경우① (이익조정 전)			경우② (이익조정 후)		
	2004년	2005년	계	2004년	2005년	계
TI	-200	400	200	400	-200	200
NOL	0	200		0	0	
TB	0	200		400	0	
TL	0	38*		96**	0	
C(15%)		5.7		14.4		
환급세액					-54***	
TP	0	32.3	32.3	81.6	-54	27.6

\*  $100 \times 13\% + 100 \times 25\%$

\*\*  $100 \times 15\% + 300 \times 27\%$

\*\*\*  $(100 \times 15\% + 300 \times 27\%) - (100 \times 15\% + (300 - 200) \times 27\%)$

〈표 6-1〉 〈표 6〉과의 비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없는 경우)

(단위: 백만원)	경우① (이익조정 전)			경우② (이익조정 후)		
	2004년	2005년	계	2004년	2005년	계
TI	-200	400	200	400	-200	200
NOL	0	200		0	0	
TB	0	200		400	0	
TL	0	38		96	0	
환급세액					-54	
TP	0	38	38	96	-54	42

〈표 7〉 이익조정 전후의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의 비교

	〈표 6〉의 경우	〈표 6-1〉의 경우
경우①	$(PMTI_0 + PMTI_1)t_1(1-c)$	$(PMTI_0 + PMTI_1)t_1$
경우②	$(PMTI_0 + X)t_0(1-c) - (X - PMTI_1)t_0^H$	$(PMTI_0 + X)t_0 - (X - PMTI_1)t_0^H$
차이*	$\{(PMTI_0 + PMTI_1)t_1 - (PMTI_0 + X)t_0\}(1-c) + (X - PMTI_1)t_0^H$ = $\{(TI_0 + TI_1)t_1 - TI_0t_0\}(1-c) + (-TI_1)t_0^H (=㉔)$	$\{(PMTI_0 + PMTI_1)t_1 - (PMTI_0 + X)t_0\} + (X - PMTI_1)t_0^H$ = $\{(TI_0 + TI_1)t_1 - TI_0t_0\} + (-TI_1)t_0^H (=㉕)$

\* 경우①의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 - 경우②의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  
 하첨자 1: 당해 사업연도  
 PMTI: 이익조정 전의 (pre-managed) 과세소득 (즉,  $PMTI_0 + X = TI_0$ ,  $PMTI_1 - X = TI_1$ )  
 c: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t_0^H$ : 결손금소급공제에 적용되는 평균세율<sup>11)</sup>

6)의 법인세 부담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과 〈표 6-1〉의 사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표 6〉과 〈표 6-1〉에서  $TI_0 > (TI_0 + TI_1) > 0$  이고 법인세를 인하를 반영하여 ( $t_0^H \geq t_0 > t_1 > 0$ )  $\{(TI_0 + TI_1)t_1 - TI_0t_0\} < 0$  이고,  $TI_1 < 0$  이므로  $(-TI_1)t_0^H > 0$  이다. 따라서, 음수항( $\{(TI_0 + TI_1)t_1 - TI_0t_0\}(1-c)$ )의 절대값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영향으

로 ((1-c)로 인해) 더 작아지는 ㉔가 ㉕에 비해서 (+)의 값을 가질 가능성(즉,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㉔값 자체도 c가 증가함에 따라 더 커지는 것을 (전술한 바와 같이  $\{(TI_0 + TI_1)t_1 - TI_0t_0\} < 0$ ) 알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시행되더라도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를 줄일 수 없는 경우(㉔ < 0 인 경우)도 가

11)  $t_0$ 와  $t_1$ 은 평균세율의 개념인 반면 (예컨대, 〈표6〉에서  $t_0 = \{(100 \times 15\% + 300 \times 27\%) + (100 + 300)\} = 24\%$ )  $t_0^H$ 는 한계세율의 개념이므로 (〈표 6〉에서  $t_0^H = \{[(100 \times 15\% + 300 \times 27\%) - (100 \times 15\% + (300 - 200) \times 27\%)] + 200 = 27\%$ )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능하지만,

$$\begin{aligned} \textcircled{a} &= \{(TI_0+TI_1)t_1-TI_0t_0\}(1-c) + (-TI_1)t_0^H \\ &= TI_0(t_0^H-t_0) - (TI_0+TI_1)(t_0^H-t_1) \\ &\quad -c\{(TI_0+TI_1)t_1-TI_0t_0\} \\ &= TI_0\{t_0^H-(1-c)t_0\} - (TI_0+TI_1) \\ &\quad \{t_0^H-(1-c)t_1\} \text{으로 변형할 수 있고} \end{aligned}$$

$\textcircled{a} > 0$  와 같은  $\{(TI_0+TI_1) \div TI_0\} < \{t_0^H-(1-c)t_0 \div \{t_0^H-(1-c)t_1\}\}$ 의 조건은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sup>12)</sup> 중소기업이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월결손금소급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하면 대부분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1.3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의 전제

중소기업이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의 축소한다는 이상의 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장부상 이익(book income(BI), 세전단계의 개념)이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하 "PTNI")의 조정이 (증가 또는 감소가) 과세소득(taxable income, 이상의 TI)의 변화로 연결되는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 기업들은 가급적 장부상 이익은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과세소득은 감소시키려

고 노력하지만,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book-tax conformity)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장부상 이익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게 되고,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은 장부상 이익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이 비교적 낮은 미국에서는<sup>13)</sup> 높은 장부상 이익과 낮은 과세소득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지만, 동(同)일치성이 비교적 높은 국내에서는<sup>14)15)</sup> 이러한 상반된 목표의 달성이 어렵고 과세소득을 조정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장부상 이익의 변화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관심의 대상인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중소기업의 과세소득을 앞당기려는 노력은 장부상 이익을 앞당기려는 이익조정으로 대신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장부상 이익조정의 대응변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의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 이하 "DA")이다.

12)  $\{(TI_0+TI_1) \div TI_0\} < f(c)$  에서  $f(c) > 0$  이고  $(df(c)+dc) > 0$  이므로,  $c$ 가 증가함에 따라  $\textcircled{a} > 0$ 의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13) Mills and Plesko(2003)에 의하면 1996~1998년의 미국기업들의 (BI+TI)의 비율은 1.4~1.7로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14) Choi et al.(2008)에 의하면 2000~2006년의 국내기업들의 (BI+TI)의 비율은 0.9~1.1로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BI-TI)를 전기말자산으로 나눈 값을 측정한 고종권(2003), 전규안(2004), 정운오 등(2006)도 평균값을 각각 -0.006, -0.007 및 -0.011이라고 하여 역시 동(同)일치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5) Choi et al.(2008)에 의하면 국내에서 장부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성이 높은 주된 이유는 (i)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양자간의 괴리가 기업규모가 큰 미국에서 더 크게 발생하고 (ii) 장부상 감가상각방법과 법인세 신고 목적의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은 미국에 비해 (전자는 주로 정액법, 후자는 주로 정률법) 국내에서는 관행적으로 두 가지 감가상각방법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iii)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 비해 법인세법상의 한도 내의 금액이면 이를 인정하는 국내에서는 같은 금액의 대손상각비가 장부 및 법인세 신고 목적으로 계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2 연구모형 및 설명변수

이상의 이론적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모형은 식(1) 및 식(2)와 같다. 즉, <표 3>과 같이 2002년과 2005년에 법인세율이 인하되었는데, 각각의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실증분석에 식(1)과 식(2)를 채택하였다.

$$DA_{it} = \beta_0 + \beta_1 \text{PERIOD}_t \\ + \beta_2 (\text{PERIOD}_t * \text{NOL}_{it} * \text{CREDIT}_{it}) \\ + \beta_3 \text{LEV}_{it} + \beta_4 \text{OWN}_{it} + \beta_5 \text{SIZE}_{it} \\ + \beta_6 (\text{PERIOD}_t * \text{TSD}_{it}) + \varepsilon_{it} \quad (1)$$

여기서,  $DA_{it}$ :  $i$ 기업의  $t$ 년도의 재량적 발생액

$\text{PERIOD}_t$ : 2001년이면 1, 2002년이면 0

$\text{NOL}_{it}$ : 2001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이 (+), 2002년의 PMTI가 (-)이면서 그 합이 (+)이면 1, 그 외에는 0

$\text{CREDIT}_{it}$ :  $i$ 기업의  $t$ 년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동(同)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0)

$\text{LEV}_{it}$ :  $i$ 기업의  $t$ 년도의 부채비율 (=부채÷총자산)

$\text{OWN}_{it}$ :  $i$ 기업의  $t$ 년도의 대주주 1인의 지분을

$\text{SIZE}_{it}$ :  $i$ 기업의  $t$ 년도의 매출액이 상위 1분위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text{TSD}_{it}$ :  $i$ 기업의 과거 3년간의 ( $t-3$ 년~ $t-1$ 년) 평균 조세혜택이 상위 50%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varepsilon_{it}$ : 잔차항

$$DA_{it} = \beta_0 + \beta_1 \text{PERIOD}_t \\ + \beta_2 (\text{PERIOD}_t * \text{MEDIUM}_{it} * \text{NOL}_{it} * \text{CREDIT}_{it}) \\ + \beta_3 \text{LEV}_{it} + \beta_4 \text{OWN}_{it} + \beta_5 \text{SIZE}_{it} \\ + \beta_6 (\text{PERIOD}_t * \text{TSD}_{it}) + \varepsilon_{it} \quad (2)$$

여기서,  $\text{PERIOD}_t$ : 2004년이면 1, 2005년이면 0

$\text{MEDIUM}_{it}$ :  $i$ 기업의  $t$ 년도에 중기업에 해당하면 1, 그 외의 경우는 0

(그 밖의 변수의 설명은 식(1)과 같음)

Lopez et al.(1998), 김경호와 박종일(2003)과 같이 장부상 이익조정액의 대용변수인 DA가 종속변수인 OLS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PERIOD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일반적인 이익조정을 반영하여 직전연도인 2001년과 2004년의 재량적 발생액이 당해연도인 2002년과 2005년보다 작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즉,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연도 간의 상대적 이익조정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 모형을 구성한 것이다.

식(1)의 (PERIOD\*NOL\*CREDIT)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중소기업이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액의 유인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결손금소급공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만이 동(同)유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 dummy 변수(PERIOD)와 이월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dummy 변수(NOL)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CREDIT)의 교차변수(interaction term)를 설명변수로 선정한 것이다.

<표 6>의 사례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 사업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pre-managed) 과세소득(<표 7>의 약어와 같이 이하 "PMTI")이 각각 (-)와 (+)이면서 그 합이 (+)인 경우에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액의 유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식(1)의 NOL은 동(同)유인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표 8〉 세율인하를 전후한 사업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의 경우의 수

	경우㉓	경우㉔	경우㉕	경우㉖
세율인하 직전연도	(+)	(-)	(+)	(-)
세율인하 당해연도	(+)	(+)	(-)	(-)

dummy 변수이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 및 본 연구의 PMTI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표 8〉은 2개 사업연도의 PMTI의 가능한 경우의 수인데, 경우㉓의 기업은 일반적인 이익이연의 유인을 가지고 경우㉖는 특별한 이익조정 유인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관심은 아니다.

또한, 경우㉔와 경우㉕에서 세율인하를 전후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합이 (-)이면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없으므로 역시 본 연구의 관심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표 6〉의 사례를 변형하여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이 각각 -4억원과 2억원이라고 하고 세율인하 전으로 앞당겨서 계상한 과세소득은 6억원으로 같다고 할 경우의 법인세 부담은 〈표 6A〉와 같은데, 법인세 부담과 이월결손금 잔액의 차이가 없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면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이 오히려 불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경우㉕도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연속하는

〈표 6A〉 〈표 6〉과의 비교 (과세소득의 합이 (-)인 경우)

(단위: 백만원)	경우① (이익조정 전)			경우② (이익조정 후)		
	2004년	2005년	계	2004년	2005년	계
TI	-400	200	-200	200	-400	-200
NOL	0	200		0	0	
TB	0	0		200	0	
TL	0	0		42*	0	
C(15%)				6.3		
환급세액					-35.7**	
TP	0	0	0	35.7	-35.7	0
(NOL carryforward)		200			200	

\*  $100 \times 15\% + 100 \times 27\%$

\*\*  $100 \times 15\% + 100 \times 27\% = 42$ 이지만 2004년에 실제 납부한 35.7이 한도임.

16) 국세청의 2007.02.12.자 보도자료에서는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이나 탈루 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에 대해 전산분석·안내한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는 '신고소득을 추이분석'이 있다. 즉,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소득이 전기 사업연도들에 비해 과도하게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러한 성실신고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확률이 커지게 된다 (2007.11.26.자 조세일보 기사 인용).

2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변화가 너무 커져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sup>16)</sup> 경우⑥에 비해 동(同)이익조정 유인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역시 본 연구의 관심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6>의 사례를 변형하여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이 각각 4억원과 -2억원이라고 하고 세율인하 전으로 앞당겨서 계상한 과세소득은 6억원으로 같다고 할 경우의 법인세 부담은 <표 6B>와 같은데,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익조정으로 인해 과세소득의 연도간 변화가 커지게 되어 (<표 6B>의 사례에서는 이익조정으로 인해 6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가하여) 과세당국에게 비정상적인 법인세 신고로 보이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 사업연도의 PMTI가 각각 (-)와 (+)이면서 그 합이 (+)인

경우에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의 유인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연구모형에 반영한다면 PMTI를 어떻게 측정할지의 문제가 생긴다.

현금주의로 측정한 영업현금흐름(이하 "OCF")과 발생주의로 측정한 장부상 이익(세후단계의 개념이므로 당기순이익, 이하 "NI")의 차이인 총발생액(total accruals, 이하 "TA")은 재량적 발생액(DA)과 비재량적 발생액(nondiscretionary accruals, 이하 "NDA")의 합인데, 이은철과 손성규(2007)의 정의와 같이 영업현금흐름과 비재량적 발생액의 합인 비재량적이익(nondiscretionary income, 이하 "NDI")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반영되기 전의 이익이 될 것이다.

$$NI = OCF + TA = OCF + (DA + NDA) = (OCF + NDA) + DA = NDI + DA$$

<표 6B> <표 6>과의 비교 (<표8>의 경우㉠의 사례)

(단위: 백만원)	경우① (이익조정 전)			경우② (이익조정 후)		
	2004년	2005년	계	2004년	2005년	계
TI* <sup>A</sup>	400	-200	200	1,000	-800	200
NOL	0	0		0	0	
TB	400	0		1,000	0	
TL	96	0		258*	0	
C(15%)	14.4			38.7		
환급세액		-54			-216**	
TP	81.6	-54	27.6	219.3	-216	3.3

\* 100×15%+900×27%

\*\* (100×15%+900×27%)-(100×15%+(900-800)×27%)

\*<sup>A</sup> 과세소득(TI)의 연도간 변화

		2004년(p)	2005년(q)	변화( p-q )
<표6>의 사례 (<표8>의 경우㉠)	이익조정 전	-200	400	600
	후	400	-200	600
<표6B>의 사례 (<표8>의 경우㉡)	이익조정 전	400	-200	600
	후	1,000	-800	1,800

$$\therefore \text{NDI} = \text{OCF} + \text{NDA} = \text{NI} - \text{DA} \quad (3)$$

또한,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장부상 세전이익인 법인세차감전순이익(PTNI)과 과세소득(TI)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 중 이익조정의 대응치인 DA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즉, BTD를 종속변수로, DA를 설명변수로<sup>17)</sup>한 회귀모형의 잔차항)을 조세회피(tax avoidance) 추정액으로 측정하였다(이하에서 편의상 동(同)조세회피추정액을 "DESAI"라 하고, BTD 중 DESAI를 제외한 금액을 "NONDESAI"라 한다.).

$$\begin{aligned} \text{BTD} &= \text{PTNI} - \text{TI} = (\text{NI} + \text{TE}) - \text{TI} \\ &= \text{NONDESAI} + \text{DESAI} \quad (4) \end{aligned}$$

TE: 법인세비용

식(3)의 OCF, NI 및 NDI는 모두 세후단계의 개념인데, 이를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세전단계의 개념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text{NI}^P &= \text{NI} + \text{TE} = \text{PTNI} = \text{OCF}^P + \text{TA}^P \\ &= (\text{OCF} + \text{TP}) + \text{TA}^P \\ \text{TA}^P &= \text{NI}^P - \text{OCF}^P = (\text{NI} - \text{OCF}) \\ &\quad - (\text{TP} - \text{TE}) = \text{TA} - \Delta\text{DTA} \\ &= \text{TA} + \text{TD} \cdot t \\ &= (\text{DA} + \text{NDA}) + \text{TD} \cdot t \\ &= \text{DA} + (\text{NDA} + \text{TD} \cdot t) \\ &= \text{DA}^P + \text{NDA}^P \\ \therefore \text{NDI}^P &= \text{OCF}^P + \text{NDA}^P \end{aligned}$$

$$\begin{aligned} &= (\text{OCF} + \text{TP}) + (\text{NDA} + \text{TD} \cdot t) \\ &= (\text{OCF} + \text{NDA}) + (\text{TP} + \text{TD} \cdot t) \\ &= \text{NDI} + (\text{TP} + \text{TD} \cdot t) = \text{NDI} \\ &\quad + (\text{TP} - \Delta\text{DTA}) \quad (5) \end{aligned}$$

상첨자 P: 세전단계

$\Delta\text{DTA}$ : 순이연법인세자산(=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의 당기증가분

TD: BTD 중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t: 법인세율

식(5)에서 순이연법인세자산의 당기증가분( $\Delta\text{DTA}$ )은 세전단계의 비재량적 발생액( $\text{NDA}^P$ )으로 보았다. 즉,  $\Delta\text{DTA}$ 는 BTD 중 일시적 차이(TD)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TD는 주로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할 수 없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손익귀속시기의 차이로<sup>18)</sup>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세전단계의 비재량적 이익( $\text{NDI}^P$ )에 BTD 중 조세회피와 무관한 NONDESAI를 합한 금액을 본 연구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begin{aligned} \text{PMTI} &= \text{NDI}^P + \text{NONDESAI} \\ &= \text{NDI} + (\text{TP} - \Delta\text{DTA}) + \text{NONDESAI} \\ &= (\text{OCF} + \text{NDA}) + (\text{TP} - \Delta\text{DTA}) \\ &\quad + \text{NONDESAI} \quad (6) \end{aligned}$$

CREDIT는 전술한 바와 같이 <표 7>의 ㉓값이 c(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연속형 변수를 채택하였다.

17) Desai and Dharmapala(2006)는 DA 대신 TA를 설명변수로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NDI의 분석에서 DA를 이익조정의 대응치로 채택했으므로, 같은 취지로 DA를 설명변수로 하였다.

18) 발생주의를 채택한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법인세법은 현금주의에 가까운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한다(법인세법 제40조).

식(2)에서 두 번째 설명변수에 중기업 해당여부(MEDIUM)를 추가한 것은 <표 17>과 같이 2001년과 2002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의 변화가 없는 반면,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하면 중기업은 동(同)비율의 변화가 없지만 소기업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동(同)비율이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상의 논의는 법인세를 인하를 전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한 것인데, 2004년말을 전후한 소기업의 경우와 같이 동(同)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앞당겨서 계상하는 유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므로,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만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위해 MEDIUM 변수를 추가하였다. <표 6>의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이 15%에서 30%로 두 배로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즉, 소기업을 가정할 경우)의 분석은 <표 6-2>와 같은데,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 결과 법인세 부담액의 합계가 오히려 증가하여 동(同)이익조정의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인 LEV, OWN, SIZE 및

(PERIOD\*TSD)는 선행연구의 연구모형들을 반영하여 채택하였다.

부채비율(LEV)은 부채약정(debt covenant)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장부상 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큰 것을 (Lopez et al., 1998) 반영하였다. 대주주 1인의 지분율(OWN)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보고상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큰 것을 (Klassen, 1997) 반영하였다. 기업규모(SIZE)는 기업규모 효과(size effect) 및 기업규모에 따라 정치적 비용(political costs)이 증가하는 것을 (Guenther, 1994) 반영하였는데, 선행연구들(Guenther, 1994; Lopez et al., 1998; 김경호와 박종일, 2003)과 같이 매출액이 상위 1분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dummy 변수를 사용하였다.

조세회피의 적극성(TSD)은 법인세를 인하 전에 조세혜택을 많이 받은 적극적인 세무계획기업들이 법인세를 인하를 전후하여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이익이연의 정도가 더 큰 것을 (Lopez et al., 1998; 김경호와 박종일, 2003)

<표 6-2> <표 6>과의 비교 (소기업의 경우)

(단위: 백만원)	경우① (이익조정 전)			경우② (이익조정 후)		
	2004년	2005년	계	2004년	2005년	계
TI	-200	400	200	400	-200	200
NOL	0	200		0	0	
TB	0	200		400	0	
TL	0	38		96	0	
C*		11.4		14.4		
환급세액					-54	
TP	0	26.6	26.6	81.6	-54	27.6

\* 2004년에는 15%, 2005년에는 30%

반영하였다. TSD를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과거 3년간의 평균 조세혜택은 선행연구들(Lopez et al., 1998; 김경호와 박종일, 2003)과 같이 Wilkie (1992)의 측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과거 3년간의 평균 조세혜택은 [과거 3년간의  $\{(PTNI \cdot t) - DTA\}$ 의 평균  $\div$  직전연도 말의 자산]으로 측정하였다.

### 3.3 표본과 분석기간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1998년부터<sup>19)</sup> 2005년까지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II에 포함되어 있는 상장기업 및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결산월이 12월이 아니거나<sup>20)</sup> 금융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제외하였고 다시 분석을 위한 재무자료가 누락된 기업과 감사보고서 주석을 이용하여 과세소득 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을 제외하였다.<sup>21)</sup>

이상의 논의와 같이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2개 사업연도의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했으므로, 2001년말과 2004년말의 세율인하를 전후하

여 각각의 표본을 선정하였고 동(同)분석도 각각의 표본에 대하여 별도로 시행하였다. 즉, <표 3> 및 <표 17>과 같이 두 번의 법인세율 인하는 세율인하 정도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의 차이가 있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04년말의 세율인하는 법인세법 개정 이후 즉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이익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점에서 차별적인 연구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실증분석의 결과도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표본에 대하여 별도의 실증분석을 시행한 것이다. 표본기업들의 구성은 <표 10>과 같다.

## IV. 실증결과

### 4.1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변수의 기술통계량은 <표 11>에서 제시하였다.

19) 변수들 중 전년도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들이(DA, TSD)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시작 연도인 2001년보다 3년 앞선 1998년부터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 12월말 결산법인인 아닌 경우에는 역년 단위로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들이 회계연도별로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1) 선행연구들(Lopez et al., 1998; 김경호와 박종일, 2003)과 같이 연구모형에 업종 dummy 변수는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재무적 발생액(DA)은 <표 9>와 같이 26개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표 9>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하기 위한 업종 구분

업종		업종		업종		업종	
1	음식료품 제조업	8	제1차 금속산업	15	의료장비 제조업 등	22	통신서비스업 등
2	섬유제품 제조업	9	조립금속 제조업	16	운송장비 제조업	23	연구개발업 등
3	목재 제조업 등	10	장치 제조업 등	17	전기·가스 공급업 등	24	소프트웨어산업 등
4	석유제품 제조업	11	컴퓨터 제조업 등	18	건설업	25	사업서비스업 등
5	약품 제조업 등	12	반도체 제조업 등	19	소매업	26	문화·관광산업 등
6	플라스틱 제조업 등	13	통신장비 제조업	20	도매업		
7	비금속제품 제조업	14	가전제품 제조업 등	21	운송업		

〈표 10〉 표본자료의 구성

	상장기업	등록기업	계	연구의 관심 기업*
2001년 및 2002년	332	508	840	114
2004년 및 2005년	490	428	918	100

\*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한 기업. 즉, 2001년 및 2002년의 표본에서는 식(1)의 (NOL\*CREDIT)이 (+)인 기업, 2004년 및 2005년의 표본에서는 식(2)의 (MEDIUM\*NOL\*CREDIT)이 (+)인 기업

〈표 11〉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2001년과 2002년의 표본 (n=1,680)*				2004년과 2005년의 표본 (n=1,836)*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DA	0.020	3.658	-54.328	52.045	0.039	3.663	-52.953	54.792
NOL	0.218	0.413	0.000	1.000	0.207	0.405	0.000	1.000
CREDIT**	0.116	0.138	0.000	0.300	0.063	0.085	0.000	0.300
LEV	0.456	0.195	0.025	0.996	0.420	0.187	0.014	0.993
OWN	0.282	0.160	0.010	1.000	0.283	0.150	0.015	1.000
SIZE	0.250	0.433	0.000	1.000	0.250	0.433	0.000	1.000
TSD	0.500	0.500	0.000	1.000	0.500	0.500	0.000	1.000
MEDIUM					0.399	0.490	0.000	1.000

DA: 재량적 발생액

NOL: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이 (+), 세율인하 당해연도의 PMTI가 (-)이면서 그 합이 (+)이면 1, 그 외에는 0

CREDIT: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동(同)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니면 0)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OWN: 대주주 1인의 지분율

SIZE: 매출액이 상위 1분위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TSD: 과거 3년간의 평균 조세혜택이 상위 50%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MEDIUM: 중기업에 해당하면 1, 그 외의 경우는 0

\* 〈표 10〉의 표본기업의 수×2 (세율인하를 전후한 2개연도의 자료)

\*\* CREDIT) 0 인 표본은 각각 876개(438개 기업)과 772개(386개 기업)

〈표 11〉과 같이 각각의 표본에서 계산한 재량적 발생액의 평균은 기초총자산의 2.0%와 3.9%으로 0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가설에 대하여 계산한  $t$ 값은  $0.23(=0.020 \div (3.658 \div 1,680^{0.5}))$ 과  $0.46(=0.039 \div (3.663 \div 1,836^{0.5}))$ ) 회귀분석의 잔차항(residual)으로 정

의하는 재량적 발생액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 〈표 8〉의 경우⑤와 같이 세율인하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이 각각 (-)와 (+)이면서 그 합이 (+)인 기업(NOL=1인 기업)은 각각의 표본의 21.8%와 20.7%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

〈표 1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DA	NOL	CREDIT	LEV	OWN	SIZE	TSD
DA		-0.11***	0.00	-0.06***	0.02	0.01	-0.03
NOL	-0.14***		-0.07***	-0.01	-0.01	0.00	-0.01
CREDIT	-0.02	0.07***		-0.12***	0.06**	-0.46***	0.20***
LEV	-0.04*	-0.05**	-0.14***		-0.06**	0.26***	-0.04
OWN	0.04	0.03	0.05**	0.00		-0.15***	0.09***
SIZE	0.03	-0.02	-0.40***	0.23***	-0.09***		-0.25***
TSD	0.03	-0.01	0.17***	-0.12***	0.11***	-0.20***	
MEDIUM	0.03	0.05**	0.24***	-0.10***	0.03	-0.43***	0.07***

DA: 재량적 발생액

NOL: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이 (+), 세율인하 당해연도의 PMTI가 (-)이면서 그 합이 (+)이면 1, 그 외에는 0

CREDIT: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동(同)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니면 0)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OWN: 대주주 1인의 지분율

SIZE: 매출액이 상위 1분위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TSD: 과거 3년간의 평균 조세혜택이 상위 50%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MEDIUM: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1, 그 외의 경우는 0

\* 우측상단은 2001년과 2002년의 표본을 이용한 결과 (n = 1,680), 좌측하단은 2004년과 2005년의 표본을 이용한 결과 (n = 1,836)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단측검정)

(CREDIT>0인 기업)은 각각의 표본의 52.1% (=876÷1,680)와 42.0%(=772÷1,836)이다.<sup>22)</sup> 이상의 조건이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 관심 기업((NOL\*CREDIT)와 (MEDIUM\*NOL\*CREDIT)이 각각 (+)인 기업)은 각각의 표본의 13.6%(=114÷840)와 10.9%(=100÷918)이다.

변수들간의 Pearson 상관계수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일부 변수들간의 상관관계가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각각의 연구모형에서 설명변수들의 VIF 값들을 검토하였으나, 다중공선성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VIF>10의 값을 가진 설명변수는 없었으므로<sup>23)</sup>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4.2 단일변량분석

〈표 13〉은 종속변수인 재량적 발생액(DA)의 연도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22) CREDIT의 평균이 2001년과 2002년의 표본에 비해 2004년과 2005년의 표본에서 크게 낮아진 것은 〈표 16〉과 같이 중소기업의 업종별 근로자 및 자본금 규모기준이 강화되어 CREDIT>0인 기업의 비율이 낮아진 것과 함께 〈표 17〉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비율도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3) 각각의 연구모형에서 VIF의 최대값은 1.61과 1.53이다.

〈표 13〉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재량적 발생액의 연도별 차이 분석

패널A: 2001년과 2002년의 비교

	n	세율인하 전(2001년)		세율인하 후(2002년)		Z값*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연구의 관심 기업	114	-0.243	5.780	-0.091	3.074	1.22
기타 기업	726	0.132	4.300	0.109	1.132	0.14

패널B: 2004년과 2005년의 비교

	n	세율인하 전(2004년)		세율인하 후(2005년)		Z값*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	
연구의 관심 기업	100	-0.012	7.933	-1.754	6.704	1.68**
기타 기업	818	0.102	0.964	0.202	0.607	-2.53***

\* Z값은 연구의 관심 기업과 기타 기업의 세율인하 전의 재량적 발생액이 세율인하 후보다 크거나 작다는 가설에 대하여 계산한 값이다. 구체적으로, 모평균이  $\mu_1, \mu_2$  인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 표본평균, 표본표준편차를 각각  $n_1, \bar{X}, S_1$  과  $n_2, \bar{Y}, S_2$  이고 두 표본의 크기가 모두 큰 경우 ( $n_1 \geq 30, n_2 \geq 30$ )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bar{X} - \bar{Y}) - (\mu_1 - \mu_2)\} / \sqrt{(\frac{S_1^2}{n_1} + \frac{S_2^2}{n_2})} \sim N(0, 1)$  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단측검정)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한 관심 기업들(세율인하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이 각각 (-)와 (+)이면서 그 합이 (+)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기업들)은 2001년말과 2004년말의 세율인하를 전후하여 모두 예상과 같이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하였으나(Z값 = 1.22 및 1.68), 그 밖의 기업들은 2001년말의 세율인하에는 예상과 다르게 특별한 이익조정을 하지 않은 (Z값 = 0.14) 반면 2004년말의 세율인하에는 예상과 같이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하였다(Z값 = -2.53).

그러나, 〈표 13〉은 연도별 DA가 서로 독립적이고 모분산도 동일하다는 제한적인 가정하의 분석이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기업들의 이

익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다변량분석에서 각각의 연구모형의 회귀계수들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 4.3 회귀분석의 결과

식(1)과 식(2)의 연구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4〉에서 제시하였다.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선행연구들과 같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하여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하였는지 여부(PERIOD)의 회귀계수는 2001년말의 세율인하에는 비교적 덜 유의적인 값을 나타낸 반면 ( $t$ 값 = 0.71) 2004년말의 세율인하에는 예상과 같이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어 ( $t$ 값 = -3.65) 비

〈표 14〉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이익조정 분석

설명변수	예상부호	패널A: 2001년과 2002년의 비교		패널B: 2004년과 2005년의 비교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0.2250	6.20***	0.2234	7.25***
PERIOD	(-)	0.0201	0.71	-0.0865	-3.65***
PERIOD*NOL*CREDIT	(+)	0.3542	1.68**		
PERIOD*MEDIUM*NOL*CREDIT	(+)			1.1479	2.92***
LEV	(+)	0.1796	3.02***	0.1312	2.48***
OWN	(-)	-0.0937	-1.33*	0.0648	1.00
SIZE	(-)	0.0174	0.67	-0.0768	-3.44***
PERIOD*TSD	(-)	-0.0220	-0.67	-0.0568	-2.05**
adjusted R <sup>2</sup>		0.0069		0.0281	
F값		2.96***		9.86***	
n		1,680		1,836	

PERIOD: 세율인하 직전연도이면 1, 세율인하 당해연도이면 0

NOL: 세율인하 직전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이 (+), 세율인하 당해연도의 PMTI가 (-)이면서 그 합이 (+)이면 1, 그 외에는 0

CREDIT: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동(同)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니면 0)

MEDIUM: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1, 그 외의 경우는 0

LEV: 부채비율(=부채+총자산)

OWN: 대주주 1인의 지분율

SIZE: 매출액이 상위 1분위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TSD: 과거 3년간의 평균 조세혜택이 상위 50%에 속하는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단측검정)

대칭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2001년말의 세율인하(1%p 인하)는 2004년말의 세율인하(2%p 인하)에 비해 인하폭이 작아서 이익조정을 통한 법인세 부담 감소의 유인(incentive)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이 연도말의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진 후에 다음 연도부터 즉시 시행됨으로써 기업들에게 이익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

지 못한 과거의 세율인하와 달리<sup>24)</sup> 2004년말의 세율인하는 2003.12.30.자 개정 법인세법에 포함되었으나 부칙 제1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서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동(同)세율인하를 통한 법인세 부담 감소의 기회를 인식하고 이용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도 비대칭적 결과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관심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이익을 앞당기는 특수한 이익조정을 하여 법

24) 2001년말의 세율인하는 2001.12.31.자 개정 법인세법에 포함되어 있다.

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PERIOD\*NOL\*CREDIT) 및 (PERIOD\*MEDIUM\*NOL\*CREDIT))의 회귀계수는 2001년말과 2004년말의 세율인하에 모두 예상과 같이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t$ 값 = 1.68 및 2.92). 즉, 세율인하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이 각각 (-)와 (+)이면서 그 합이 (+)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들은 전술한 이론적 분석과 같이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실증분석의 결과는 해당 기업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대칭적인 결과를 보인 세율인하를 전후한 일반적인 이익조정(PERIOD)과 달리 관심 기업들의 특수한 이익조정은 세율인하 정도에 관계 없이 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2001년말의 비교적 작은 세율인하나 2001년말에 비해 낮아진 2004년말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에도 불구하고<sup>25)</sup> 결손금 소급공제제도와 동(同)세액감면의 효과가 결합하면 동(同)제도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법인세 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변수인 부채비율(LEV)의 회귀계수는 2001년~2002년 및 2004년~2005년의 표본에 모두 예상과 같이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어 ( $t$ 값 = 3.02 및 2.48) 부채약정(debt covenant)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장부상 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크다는 Lopez et al.(1998)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다른 통제변수인 대주주 1인의

지분율(OWN)과 기업규모(SIZE)의 회귀계수는 2001년~2002년 및 2004년~2005년의 표본에 예상과 같은 유의적인 값과 비유의적인 값을 나타내는 (OWN의  $t$ 값 = -1.33 및 1.00, SIZE의  $t$ 값 = 0.67 및 -3.44) 비대칭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김경호와 박종일, 2003)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재무보고상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유인이 크다는 Klassen(1997)의 주장을 반영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킨 대주주 1인의 지분율(OWN)은 2001년~2002년에는 예상과 같은 유의적인 (-)값을 나타낸 반면 2004년~2005년에는 비유의적인 값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재무보고상 이익으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를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가<sup>26)</sup> 대주주 지분율에 관계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 통제변수인 조세회피의 적극성(PERIOD\*TSD)의 회귀계수는 2001년말의 세율인하에는 비유의적인 값을 나타낸 반면 ( $t$ 값 = -0.67) 2004년말의 세율인하에는 예상과 같이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어 ( $t$ 값 = -2.05) 비대칭적인 결과를 보였다. 각각의 세율인하를 전후한 (PERIOD\*TSD)의 유의성은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익이던 여부(PERIOD)와 ( $t$ 값 = 0.71 및 -3.65) 유사한데, 이러한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2004년말의 세율인하에 비해 인하폭이 작아서 법인세 부담 감소의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고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서 이익조정을 검토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던 2001년말

25) 이익조정을 통해 감소하는 법인세 부담액을 나타내는 <표 7>의 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c)이 증가함에 따라 더 커지는 것과 함께 세율인하의 정도( $t_0-t_1$ )에 따라 역시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6)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경영성과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제가 2003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폐지되고 성과급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다(2008.04.20.자 조세일보 기사 인용).

의 세율인하에는 조세회피의 적극성 여부도 이익 이연 여부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업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기간으로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일반적인 이익조정 외에 대기업에 비해 우호적인 법인세제 하에서 중소기업의 이익조정이 대기업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한 후에 최근의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법인세법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결손금소급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한 연속한 2개 사업연도의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re-managed taxable income, PMTI)이 각각 (-)와 (+)이고 그 합이 (+)이면 일반적인 이익조정과는 반대로 이익을 앞당기는 이익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점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특수한 이익조정이 최근 세율인하(2001년

말과 2004년말)에도 유의적으로 발생한 것을 확인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과 함께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이익을 이연시키는 이익조정을 했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익조정도 세율인하 폭이 작고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어서 이익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2001년말에는 비유의적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충하면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국내와 외국의 선행연구가 모두 법인세율 인하를 전후하여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익을 이연시킬 것이라는 예상을 실증분석으로 확인했지만, 추가적으로 기업유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법인세제가 이익조정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확인한 것이 본 연구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세율을 인하할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p~5%p) 계획인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의 예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재정경제부의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을 지역에 따라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sup>27)</sup> 중소기업에

27) 동(同)세제개편안의 개정내용은 <표 15>와 같다.

<표 15> 2007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

지역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비율	70%	50%	30%	0%**

\*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경제력 등 14개 지표를 평가해 나눈 것으로 1등급이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4등급이 가장 발전한 지역

\*\* 4등급의 경우에도 소기업은 10%

대한 조세지원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에서 동(同) 비율이 향후 확대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소기업의 특수한 이익조정 의 유인은 더욱 강화될 것이므로, 과세당국 및 회계감독기구는 정책입안을 위해 본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외의 다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더욱 정교한 모형화(modelling)를 통한 이론적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이익조정 전의 과세소득(PMTI)을 정의하고 이용하였는데, PMTI를 정의하는데 바탕이 된 수정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의 재량적 발생액(DA)과 Desai and Dharmapala(2006)의 조세회피추정액(이상의 DESAI)의 이론적 정합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한계가 있다.<sup>28)</sup> 전자는 세무회계의 실증 연구에 관련된 공통된 문제점이기 때문에 당장의 개선은 어렵지만 후속연구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후자는 동(同)개념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연구들이 가지는 공통된 문제점인데 이후의 이론적 발전에 따라 본 연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종권. 2003.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8권(2): 75-103.
- 국세청. 2007. 「보도자료: '07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이력 점 유의해서 신고하세요!(2007.02.12.)」
- 김경호·박종일. 2003. "법인세를 인하여 따른 기업의 이익조정행태." *회계학연구* 제28권(3): 85-120.
- 이은철·손성규. 2007. "재량적발생액을 이용한 횡단면적 분포도상의 적자회피 이익조정에 대한 재조명." *회계학연구* 제32권(2): 61-87.
- 재정경제부. 2005. 「2005 조세지출보고서」
- 재정경제부. 2006. 「2006 조세지출보고서」
- 재정경제부. 2007. 「2007 조세지출보고서」
- 재정경제부. 2007. 「보도자료: 2007년 세계개편(안) (2007.08.22.)」
- 전규안. 2004.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의 상충관계가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1): 29-56.
- 전병욱·최원욱. 2007. "최저한세가 기업의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경영학연구* 제36권(4): 981-1007.
- 정운오·고종권·김갑순·노희천. 2006.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회계학연구* 제31권(4): 203-238.
- Choi, W., H. Lee, and B.W. Jun. 2008. The provision of tax services by incumbent auditors and earning management: Evidence from Korea. *mimeo*. Yonsei University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2): 193-225.
- Desai, M.A., and D. D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45-179.
- Guenther, D.A. 1994. Earnings management in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 changes: Evidence from the 1986 Tax Reform Act. *The Accounting Review* 69(1): 230-243.
- Klassen, J.K. 1997. The impact of inside ownership concentration on the trade-off between

- financial and tax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72(3):455-474.
- Lopez, T.J., P.R. Regier, and T. Lee. 1998. Identifying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around TRA 86 as a function of prior tax-aggressive behavi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0(1): 37-56.
- Maydew, E.L. 1997. Tax-induced earnings management by firms with net operating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5(1): 83-96.
- Mills, L.F., and G.E. Plesko. 2003. Bridging the reporting gap: A proposal for more informative reconciling of book and tax income. *National Tax Journal* 56(4): 1-19.
- Scholes, M.S., and M.A. Wolfson. 1992. *Taxes and Business Strategy: A Planning Approach*.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choles, M.S., G.P. Wilson, and M.A. Wolfson. 1992. Firms' response to anticipated reductions in tax rates: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Supplement): 161-185.
- Wilkie, P.J. 1992. Empirical evidence of implicit taxes in the corporate sector.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4(1): 97-116.

### 〈부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구분기준 및 지역, 규모 및 업종별 세액감면 비율

본 연구의 대상기간인 2001년 이후에 적용되는 기준 및 비율은 〈표 16〉 및 〈표 17〉과 같다.

〈표 16〉 중소기업의 업종별 근로자 및 자본금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단위: 명, 억원)

	2001년		2002년		2003년~	
	상시근로자	자본금	상시근로자	자본금	상시근로자	자본금
업종a	300	80	300	80	300	80
업종b	300	30	300	30	300	30
업종c	300	300	300	300	300	300
업종d	200	200	300	300	300	300
업종e	200	200	200	200	300	300
업종f	200	200	200	200	200	200
업종g	100	100	200	200	200	200
업종h	100	100	100	100	200	200
업종i	50	50	100	100	200	200
업종j	100	100	50	50	200	200
업종k	100	100	100	100	100	100
업종l	50	50	100	100	100	100
업종m	50	50	50	50	100	100
업종n	50	50	50	50	50	50
업종o	30	20	50	50	100	100
업종p	30	20	50	50	50	50

업종a	제조업
업종b	광업, 건설업, 운송업
업종c	대형 종합 소매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업종d	호텔업
업종e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업종f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영화산업
업종g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업종h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i	사업지원 서비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업종j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업종k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업종l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업종m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업종n	농업 및 임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산업용 세탁업
업종o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업종p	그 밖의 모든 업종

(표 1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제한없음	수도권	중·소	중·소	수도권	중·소	수도권	중·소	수도권	중·소	수도권	중·소	수도권	중·소
지역	제한없음													
규모	제한없음													
업종①	20%	0%	20%	30%	0%	20%	30%	0%	10%	15%	0%	20%	30%	0%
업종②**	20%	0%	20%	30%	20%	20%	30%	20%	10%	10%	10%	20%	30%	10%
업종③		0%	20%	30%	0%	20%	30%	0%	10%	15%	0%	20%	30%	0%
업종④		0%	10%	10%	0%	10%	10%	0%	5%	5%	0%	10%	10%	0%
업종⑤					0%	20%	30%	0%	10%	15%	0%	20%	30%	0%
업종⑥								0%	10%	15%	0%	20%	30%	0%
업종⑦								0%	10%	5%	0%	10%	10%	0%
업종⑧											0%	20%	30%	0%
업종⑨														0%

\* "소기업"은 중소기업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제조업은 100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및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인 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6항의 "지식기반산업"

업종①	제조업, 방송업, 방충업, 물류산업(2001년~2002년에는 운수업)
업종②	전기통신업(2002년 이전에는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용관련업(2002년 이전에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업종③	여객운송업(2001년~2002년에는 운수업), 광업, 건설업, 어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업종④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업종⑤	작물재배업(2005년 이전에는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업종⑥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증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OEM 수탁생산업
업종⑦	관광사업
업종⑧	건설폐기물처리업
업종⑨	선박관리업, 분노수집운반업(2007년 이전에는 분노 등 관련 영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무역전시산업, 광고업, 토양정화업

## Particular Earnings Management of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Around Tax Rate Reductions

Byung Wook Jun\*

### Abstract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tax-minimizing behavior of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SMEs' hereafter)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s enacted in 2002 and 2005, which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at of big enterprises ('BEs' hereafter).

Since SMEs are treated more favorably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an BEs in that only SMEs can take advantage of net operating loss carryback ('NOL carryback' hereafter) and can also deduct "percentage-of-tax-liability" up to 30% of tax liability without any corporate activities ('special tax deduction' hereafter), the general expectation that taxable income and its conforming book income is deferred would not hold for SMEs, and SMEs could have different incentives to accelerate accounting earnings instead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theoretically shows that if (i) the "pre-managed taxable income" for the year immediately preceding tax rate reduction and that for the year tax rate reduction is enacted are negative and positive respectively, and (ii) the sum of those pre-managed taxable incomes is positive, then SMEs can minimize tax burden by accelerating earnings, and furthermore, provides evidence that such earnings management was so prevalent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s enacted in 2002 and 2005.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provides evidence that the general income-deferring earnings management was not so prevalent around the tax rate reduction in 2002, when the magnitude of tax rate reduction was slight and managers had little time to contemplate on whether to engage in the earnings management, and, as a result, supplements previous studies.

Because the government is driving a big tax rate reduction and emphasizing tax incentives for SMEs, this study is expect to help "fine-tune" the policy and forecast effects of the policy.

Key words: earnings management, tax rate reduction, NOL carryback, special tax deduction, pre-managed taxable income

---

\* Ph. D. of Business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